

## Are You O.K! Architecture?

“건축과 건설은 무엇이 다른가?”

설계 강의 첫 시간! 학생들에게 항상 던져보는 의도적인 물음이다. 건축은 본인에게 천부적인 재능과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건축은 시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건설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건설과는 달리 창의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축은 무엇을 만들까?(What to build?)를 추구하는 ‘창작활동’ 인 반면 건설은 어떻게 만들까?(How to build?)를 추구하는 ‘생산활동’ 이라는 점이다.

언젠가의 일이다.

“왜 우리나라의 건물은 다 똑 같습니까?”

“내 건물 내가 짓는데 감리도 내 맘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

머뭇거렸다. 팬스레 남의 핑계나대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좁은 땅에서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 만큼 살게 된 것도 건설기술자가 최고의 직업으로 회자되었던 국가 주도의 건설한국의 덕분이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니 우리나라에는 건축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건설만이 군림해 왔다. 그마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도로사선제한, 층수제한 등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는 건축 관련법 하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건축의 본질인 창작의 재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재주로 왜곡 발전되어져 왔다. 건축이 건축다워지려면 ‘용적률 및 파난과 일조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직적 제한과 수평적 제한은 철폐’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제건축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 실무협상 차 창작산업인 건축의 선두주자라는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건설사의 설계경쟁에 대하여 문의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를 할 수 있나요?”

상당한 의아스러운 반응과 함께 대답이 되돌아온다.

“예?”

국가는 국가의 틀을 생각하고 국가다운 사고로

모든 전문분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주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럽선진국은 건축을 창작산업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 국제화 시대에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건축사만 설계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전적 도용으로 업무의 영역도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사 업을 허용하는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는 건설사 또는 개발업자가 건축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여야 할 최고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거하는 건축물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냥 적당한 면적이하는 ‘알아서 설계하여 신고하고 알아서 짐짓고 그 안에 살아라.’라는 현행법은 더 이상 존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감기가 걸리면 의료보험이니 해서 국가가 나서서 약값 의료비 보태주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중대한 사안은 감기보다 못한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이상한 행정의 표본이다.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없다.

개인 사유의 건축물을 두고 국가가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사를 고용해서 설계하고 감리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불하는 건축주를 고발하게 하는 우리의 제도는 고쳐야 마땅하다. 도대체 국가가 나서서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은 안전하지 아니하다는 것인지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국가는 국가의 틀을 생각하고 국가다운 사고로 모든 전문분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주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럽선진국은 건축을 창작산업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 국제화 시대에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건축사만 설계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전적 도용으로 업무의 영역도 다른 건설사에게 건축사 업을 허용하는 일에 국력을 소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그만 두어야 한다.

건축에서 국가가 할 일은 감리자의 지정이 아니라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라는 국가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우선순위 일 것이다.

바라노니,

모든 국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건축아! 괜찮니?”